

Safety & Labor

Q · A

분 야 | 주40시간 근무제

제 목 | 중도입사자의 연차일수 적용

Q

1. 중도 입사자일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준이라 만약 2005년 3월 1일에 입사자는 10개월 만큼은 미 적용되어 2007년 1월에 15개월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적용된 10개월 만큼을 현재 소급해주려고 할 경우 아래 ①번과 ②번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① 10일(구법) * 10개월 / 12개월

② 15일(신법) * 10개월 / 12개월

2. 2006년 3월 1일 입사자 역시 회계연도 기준이라 올해 연차일수는 없으며 매월 1개씩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현 시점에 2006년 3월 1일 ~12월까지의 10개월을 소급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적용 기준은 2006년 3~6월은 3개월/12 * 10개, 2006년 7월~12월 6개월/12개월 * 15개인지 궁금합니다.

A

2006년 7월 1일 개정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2006년 3월 1일에서 2007년 1월에 연차휴가산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연차휴가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5\text{일} \times \text{근속기간 총일수} / 365\text{일} = \text{연차휴가}$

2007년 7월1일 개정법 적용사업장인 경우 2006년 7월 이후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만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 매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1년



이상자인 경우에는 산정시점에 따라 구법 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1일 입사한 경우에는 구법(연차 10일)이 적용됩니다.

분 야 | 체불임금

제 목 | 밀린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



송탄에 있는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에 있던 사업주에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제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밀린 월급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주가 바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위반의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체불임금이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전에 사업장의 도산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동 임금은 도산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 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 목 | 업무용 기기 반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중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 전용 디지털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를 구입하였을 시
(1) 사용하지 않은 기기는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는지요?
(2) 공사기간이 3개월인데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반납하여야 하는지요?
(3) 장기간 공사 시 공사 준공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기기를 반납해야 하는지요? 발주처에서는 사용기기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및 공사자가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확보하여 당해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위 금액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의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 야 |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 목 | 고용보험환급과정에 대한 질문



현재 재직자 지원과정으로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회사로 다시 환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학원수강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회사는 지원금을 환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학원출석은 환급기준에 맞게 출석을 다한다는 가정 하에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며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관리·수행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에게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 야 |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 목 | 출근길 교통사고



저희회사는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정에 근무하는 근무자 한사람이 휴가를 냈을 경우 07:00~19:00, 19:00~07:00 위와 같이 4시간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난 날도 대근을 들어가야 하기에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출근도중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하였거나,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